

제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번호	1522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1. 5.12.
발 의 자 : 양순경 의원외 4인

1. 제안이유

제천시 농업인에게 「농촌진흥법」 제2조 제3항에 따라 기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을 보완하고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과학 전문 농업기술인으로 육성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증대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제천시 농업인 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전문과학농업기술인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(안 제1조)
- 명칭과 위치, 대학운영조직과 업무 및 교수의 임명 등을 규정함(안 제2조 제3조 제5조)
-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위원회구성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입학전형, 교육과정, 입학자격, 입학생선발, 학사일정 등을 규정함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)
- 성적평가, 졸업, 학생회활동, 포상 등을 규정하고 학사규정과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7조, 제19조, 제20조, 제22조, 제24조, 제25조)

붙임 : 제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끝

제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촌진흥법」 제2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 농업인들에게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과학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여 제천시 농업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등) ① 대학의 명칭은 제천시 농업인대학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② 대학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.

제3조(조직) ① 대학에는 학장, 부학장, 교학과장, 행정팀장을 각 1명씩 둔다.

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,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, 교학과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으로 교학담당은 대학업무 실무팀장,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관으로 한다.

제4조(학장 등) 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하며 소속 조직원을 감독하고, 학생을 지도한다.

②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,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교학과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, 예산운영 등 대학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교수의 위촉 등)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대학교수
2. 연구기관 관계자
3.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·연구직 공무원
4.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6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(이

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,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,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
-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- ⑦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.
-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교수 및 강사 수당 등)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(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)와 외부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수당)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「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입학전형) ① 대학과정은 2개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.

- 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0조(교육과정) ① 교육과정은 교과, 과제실습,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·운영한다.

- ② 각 교과는 기초농업분야, 전문기술분야, 기본소양분야로 구분

운영하며 각 과정의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.

- ③ 현장학습은 선진농장, 농업관련 기관·법인·단체, 독농가 등을 방문하여 실시한다.
- ④ 교육과정의 변경 등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입학자격 등) ① 입학자격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. 단,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입학생 선발)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9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,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3조(학사일정 등)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.

- ② 수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작목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수업일수는 연간 30일内外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.
- ④ 농번기에는 휴강 할 수 있다.

제14조(교육비)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. 다만,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제15조(자퇴)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6조(퇴학 등) 학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
2.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
3. 질병, 사고,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
4.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킨 때

제17조(성적평가) ① 시험은 객관식, 주관식, 논문 등으로 실시하며 담당교수 및 교학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②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, 수료점수는 출석상황, 학습활동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균 60점 이상,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 할 수 있다. 다만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.

제18조(유급) 정해진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하며, 다음연도 학과 운영시 유급연도의 부족한 교육을 이수하면 졸업자로 인정한다.

제19조(졸업 및 졸업자 우대) ① 학생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을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

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 할 수 있으며,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20조(학생회 활동) 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생회를 둔다.

② 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회 규정으로 정 한다.

③ 학생회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다.

제21조(포상) 재학 중 출석사항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
모범이 되거나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
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제22조(예산의 지원)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
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(공가)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빙자료
를 갖추어 공가를 신청할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.

1. 법령에 의한 소집. 검열.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
2. 사전 계획된 농촌진흥기관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
3. 본인 및 직계존비속 애경사시
4. 본인 및 배우자 출산시

제24조(학사규정)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
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2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제천시농업인대학(제 1기) 입학원서(제11조제2항 관련)

■ 접수번호 :

■ 지원과 : 과

인적사항	주 소						사진 (3×5cm)	
	생년월일							
	성 명 한글) 한자)	성 별	남, 여					
	전화번호 집전화) 휴대폰)	영농종사 경력	년					
	주요 재배작물	면적						
최종학력	년	학교(과)	졸업·중퇴				
영농기반	구 분	계	벼 (m ²)	채소 (m ²)	파수원 (m ²)	특작 (m ²)	축산 (두)	기타 (m ²)
	소유							
	임차							
	연매출	만원						
경력 및 교육사항	단체활동 경력	<input type="radio"/> 단체명 :	(경력 : 년, 직위:)					
		<input type="radio"/> 단체명 :	(경력 : 년, 직위:)					
		<input type="radio"/> 단체명 :	(경력 : 년, 직위:)					
		기간	경력 및 교육 사항					

상기 본인은 제천시농업인대학 학사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.

년 월 일

입학 지원자 성명

(인)

제천시농업인대학 학장 귀하

210mm×297mm 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